

해양수산부 부령 제223호

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17년 01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
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항해 및 운용”을 “항해, 운용 및 전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중 항해·운용 및 기관”을 “항해, 운용 및 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의 교육대상자란 중 “여객선”을 “내항여객선”으로 하고, 같은 기술교육의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란 다음에 고전압 운용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 전 압 운용교육	1,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,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사, 운항사(기관전문) 또는 전자 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	고전압 설비의 개요 및 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	1일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의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란 중 “여객선”을 “내항여객선”으로 하고, 같은 직무교육의 고전압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,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,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장, 1등 기관사, 운항장(기관전문) 또는 1등 운항사(기관전문)로 승무하려는 사람

별표 1 비고에 제12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위 표에서 “내항여객선”이란 「해운법」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.

16.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 중 “2021년 1월 1일”을 “2017년 2월 1일”로 한다.

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“여객선”을 “내항여객선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중 “1,000볼트 이상 고전압의 발전기 또는 변압기가 설치된 항해선”을 “1,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,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”으로 한다.

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“선교자원관리교육 및 기관실자원관리교육 폐지”를 “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신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선교자원 관리교육 또는 기관실자원관리교육”을 각각 “선교자원관리교육, 기관실자원 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”으로, “이수하고”를 “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필기시험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6급 항해사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,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,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1.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사람
2. 이 규칙 시행 당시 1,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,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

3. 이 규칙 시행 당시 1,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,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필기시험의 면제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6급 향해사 : <u>향해 및 운용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소형선박 조종사 : <u>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중 향해·운용 및 기관</u>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제12조(필기시험의 면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향해, 운용 및 전문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향해, 운용 및 기관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